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 - 49
------	---------

제출년월일 : 2016.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사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의 내용을 법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원활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조항이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조항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수정(안 제1조)
- 나. 조례 제정 당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으나,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근거 조례를 수정(안 제9조제4항)
- 다. 센터 명칭 표시 삭제 (안 제2조제3항, 별표1)
-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6. 5. 4. ~ 5. 24. (제출의견 없음)
- 2)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제외 법령
- 3)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6)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센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마포구”를 “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마포구의”를 “구의”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을 “제3조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4인”을 “4명”으로,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및 운영과 관련하여”를 “및 운영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점검하도록”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u>에 설치하는 <u>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u>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u>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u>----- ----- ----- ----- -----</p>
<p>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생략)</p> <p>③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센터 명칭 표시는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u>에 설치하는 <u>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u>-----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마포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  
운동 전개

4. ~ 6. (생략)

② 제1항의 기능 중 마포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  
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  
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 상담실 · 자료실 등 필요한 공  
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② (생략)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  
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  
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  
가정 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  
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  
다.

제3조(기능) ① -----  
----- 다음 각 호와 --.

1.·2. (현행과 같음)

3. 구 -----  
-----

4. ~ 6. (현행과 같음)

② ----- 구의 -----  
-----  
-----.

제4조(시설) ----- 제3  
조의 -----  
-----  
-----  
-----.

제5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4명  
----- 「건강가정기본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  
-----.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9조(운영)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 및 운영에 -----  
-----

② -----  
-----  
자체 규정-----.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  
----- 각  
호의 -----.

1. -----  
-----  
--제32조에 따른 -----  
-----

2. -----제2조에 따른-----  
-----

④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  
-----  
-----  
-----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점검하도록-----.

제13조(시행 규칙) ----- 시행에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을 법에 맞게 개정·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강지화
연 락 처	02-3153-8935